

# 붙임 5

# 우대가점 기준

## □ 가산점 총괄표

유형	가점대상	전형단계				우대 사항	부여기준
		서류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법정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	✓	✓	✓	5% 또는 10% 가점	관련 법령에 따름
자격증	전문 및 기타 자격증 보유자	✓				1~5% 가점	상세 기준 1 참조
어학	공인영어성적	✓				2~3% 가점	상세 기준 2 참조 ※ 사회형평적 채용만 해당
	제2외국어	✓				2~3% 가점	상세 기준 3 참조
사회적 배려 대상	장애인					5% 가점	상세 기준 4 참조 ※ 고졸자 제한경쟁의 경우 고졸자 가점 미부여
	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	✓				
	고졸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특별	해외봉사단 (KOICA 직접 및 위탁 시행으로 파견되는 봉사단 경험자로 e-kov 시스템에 등록되었으며 총 해외 봉사활동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5% 가점	총 활동기간 1년 이상자
						3% 가점	총 활동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자
						2% 가점	총 활동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협력단(KOICA) 근무자 (코디네이터, 공무원, 국내 기간제근로자)	✓					5% 가점
3% 가점							총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자
정부 권장 정책	영프로페셔널 (KOICA 해외사무소, 재외공관, ODA 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	✓				5% 가점	총 활동기간 1년 이상자
						3% 가점	총 활동(근무)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자
	2% 가점					총 활동(근무)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자	
	1% 가점					총 활동(근무)기간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자	
KOICA 인턴기자단							
KOICA 연수모니터링 인턴							
KOICA 장애인인턴							
KOICA 국제개발협력인턴							

※ 특별 및 정부권장정책에 대한 가점은 활동 종료일로부터 5년간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가점 부여 기준에 따름

□ (상세기준 1) 자격증

분야	배점		
	1%	3% (기사 등급)	5% (기술사 등급)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KOICA	ODA 일반 자격증 ODA 전문가 자격증		
프로젝트 관리	PRINCE2 Foundation PMP 자격증	PRINCE2 Practitioner	
전문 자격증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 회계사, 건축사, 변리사, CFA(재무분석사, Level3)
	사회조사분석사(2급)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ADsP) 데이터 아키텍처 준전문가 (DAsP)	사회조사분석사(1급)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 전문가(ADP) 데이터 아키텍처 전문가(DAP) SQL개발자 및 전문가(SQLD, SQLP)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ISMS-P 인증심사원 국제공인정보시스템 보호전문가(CISSP) 정보시스템 감사사(CISA)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리눅스 마스터(2급) 네트워크 관리사(2급)		

□ (상세기준 2) 공인어학성적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만 해당)

구분	인정시험	인정등급 및 가점비율	
		2%	3%
영어	TOEIC NEW TEPS TOEFL/IBT G-TELP(level 2)	TOEIC 830 ~ 920점 NEW TEPS 324 ~ 393점 TOEFL/IBT 95 ~ 107점 G-TELP(Level 2) 80~92점	TOEIC 921 ~ 990점 NEW TEPS 394 ~ 600점 TOEFL/IBT 108 ~ 120점 G-TELP(Level 2) 93~99점

□ (상세기준 3) 제2외국어

구분	인정시험	인정등급 및 배점	
		2%	3%
프랑스어	DALF DELF FLEX	DELF B1 FLEX 2A, 2B	DALF 모두 인정 DELF B2 이상 FLEX 1A, 1B, 1C
스페인어	DELE FLEX	DELE B1 FLEX 2A, 2B	DELE B2 이상 FLEX 1A, 1B, 1C
러시아어	TORFL FLEX	TORFL 1단계 FLEX 2A, 2B	TORFL 2, 3, 4단계 FLEX 1A, 1B, 1C
아랍어	아랍어 전공	아랍어 전공(학사)	아랍어 전공(석사 이상)

□ (상세기준 4) 사회적 배려대상

구분	대상 기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자) 또는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 자
고졸자	최종 졸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이하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하나 대학(전문대학) 재학·휴학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은 제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